

# 공개경쟁채용시험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

시행기관 : 국회사무처

우리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제도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바뀌는 시험제도의 **주요내용과 시행시기**를 숙지하시어 시험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
구 분	주 요 내 용	시 행 시 기				
입법고시 제1차 시험 헌법과목 도입 및 제2차 시험 선택과목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제1차시험에 헌법과목을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고 <u>헌법과목 점수를 60점 이상 획득한 응시자</u> 중 PSAT 성적순으로 제1차시험 합격자를 결정</li> <li>- 헌법과목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제1차시험 불합격</li> </ul> </li> <li>※ 2016년도 입법고시 제3차시험 불합격자의 경우 헌법 과목 적용없이 제1차시험 면제됨</li> </ul>	<b>2017년도 입법고시 부터 적용</b>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제2차시험 선택과목 변경 헌법, 입법과정론을 폐지하고 아래와 같이 변경함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34 1505 1094 1843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일반행정 직류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<b>민법(친족상속법제외)</b>, 정책학, 지방행정론(도시행정포함), 정보 체계론, 조사방법론(통계분석제외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법제직류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<b>세법</b>, 상법, 형사소송법, 민사소송법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재경직류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<b>세법</b>, 회계학, 통계학, 국제경제학, 상법</td> </tr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제2차시험 필수과목은 현행대로 유지</li> </ul>		일반행정 직류	<b>민법(친족상속법제외)</b> , 정책학, 지방행정론(도시행정포함), 정보 체계론, 조사방법론(통계분석제외)	법제직류	<b>세법</b> , 상법, 형사소송법, 민사소송법
일반행정 직류	<b>민법(친족상속법제외)</b> , 정책학, 지방행정론(도시행정포함), 정보 체계론, 조사방법론(통계분석제외)					
법제직류	<b>세법</b> , 상법, 형사소송법, 민사소송법					
재경직류	<b>세법</b> , 회계학, 통계학, 국제경제학, 상법					

구 분	주 요 내 용	시 행 시 기				
<p>영어•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성적 인정기준일 변경</p>	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34 383 1142 577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434 383 790 434">현행 인정기준일</th> <th data-bbox="790 383 1142 434">개정 인정기준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434 434 790 577">응시원서 제출할 때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</td> <td data-bbox="790 434 1142 577">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영어능력검정시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</li> <li>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</li> </ul>	현행 인정기준일	개정 인정기준일	응시원서 제출할 때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	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	<p><b>2017년도 입법고시 부터 적용</b></p>
현행 인정기준일	개정 인정기준일					
응시원서 제출할 때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	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					
<p>통신•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가산제도 폐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해당분야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제도(만점의 1% 또는 0.5%)를 폐지함</li> </ul> <p><b>붙임1 참고</b></p>	<p><b>-2016년도 시험까지 가산점 적용 -2017년부터 폐지</b></p>				
<p>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제도 신설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적용시험 : 8급•9급 공개경쟁채용시험</li> <li>■ 가산대상 : 의사자의 배우자•자녀 취업보호대상인 의상자 및 그 배우자•자녀</li> <li>■ 가산점 : <u>만점의 5% 또는 3%</u> (단,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해야 적용)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52 1550 1038 1738"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552 1550 689 1644">5%</td> <td data-bbox="689 1550 1038 1644">의사자의 배우자•자녀 의상자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552 1644 689 1738">3%</td> <td data-bbox="689 1644 1038 1738">의상자의 배우자•자녀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가점을 받은 합격자는 선발예정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</li> <li>■ 「국가유공자법」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과 중복 시 응시자가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도록 함</li> </ul>	5%	의사자의 배우자•자녀 의상자	3%	의상자의 배우자•자녀	<p><b>2016년도 시험부터 적용</b></p>
5%	의사자의 배우자•자녀 의상자					
3%	의상자의 배우자•자녀					

구 분	주 요 내 용	시행시기
방호 직렬에 대한 공채 과목 신설 및 실기시험 체력 측정기준 개정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방호 직렬 9급 공채 시험과목 국어, 영어, 헌법, 한국사, 사회</li> <li>■ 무도 가산점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태권도, 유도, 검도, 합기도</li> <li>- 무도 3단 이상(3%), 무도 2단 이상(2%)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단, 해당 직렬에 대한 시험의 실시여부는 매년도 9급 공채 공고 시에 공고문을 확인하기 바람</p>	<b>2016년도 시험부터 적용</b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경위 및 방호 직렬 실기시험 체력측정기준 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측정종목 및 측정기준 등 변경</li> </ul> </li> </ul> <p><b>붙임2 참고</b></p>	

※ 바뀌는 시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항이 적용되는 공채시험의 공고문에서도 자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.

**붙임1.**

**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**

구분	채용계급	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			
통신· 정보처리 분야	일반직 6·7급	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	1%	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	0.5%
	일반직 8·9급	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	1%	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	0.5%
사무관리 분야	일반직 6급 이하	컴퓨터활용능력 1급	1%	워드프로세서 1급, 컴퓨터활용능력 2급	0.5%

비고: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「국가기술자격법」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.

**붙임2.**

**경위직렬 및 방호직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기시험에 있어 체력측정기준 및 합격자 결정 방법**

① 측정기준

종 목	성별	평 가 점 수									
		10점	9점	8점	7점	6점	5점	4점	3점	2점	1점
100미터 달리기 (초)	남	13.0 이내	13.1~ 13.5	13.6~ 14.0	14.1~ 14.5	14.6~ 15.0	15.1~ 15.5	15.6~ 16.0	16.1~ 16.5	16.6~ 17.0	17.0 이후
	여	15.5 이내	15.6~ 16.3	16.4~ 17.1	17.2~ 17.9	18.0~ 18.7	18.8~ 19.4	19.5~ 20.1	20.2~ 20.8	20.9~ 21.5	21.5 이후
1,000미터 달리기 (초)	남	230 이내	231~ 236	237~ 242	243~ 248	249~ 254	255~ 260	261~ 266	267~ 272	273~ 279	280 이후
	여	290 이내	291~ 297	298~ 304	305~ 311	312~ 318	319~ 325	326~ 332	333~ 339	340~ 347	348 이후
팔굽혀펴 기 (회/1분)	남	58 이상	57~52	51~46	45~40	39~34	33~28	27~23	22~18	17~13	12 이하
	여	50 이상	49~45	44~40	39~35	34~30	29~26	25~21	20~16	15~11	10 이하
윗몸일으 키기 (회/1분)	남	58 이상	57~55	54~51	50~46	45~40	39~36	35~31	30~25	24~22	21 이하
	여	55 이상	54~50	49~45	44~40	39~35	34~30	29~25	24~19	18~13	12 이하
좌우 악력 (kg)	남	61 이상	60~59	58~56	55~54	53~51	50~48	47~45	44~42	41~38	37 이하
	여	40 이상	39~38	37~36	35~34	33~31	30~29	28~27	26~25	24~22	21 이하

비 고

- 측정된 수치 중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, 1,0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,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- 실기시험의 종목에 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.

② 합격자 결정 방법 : 제1항의 측정기준에 의한 점수가 매 종목 2점 이상, 전 종목 합산점수가 2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 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.